

남양주도시공사 정관

2007. 11. 5. 제정	2008. 8. 20. 개정
2009. 12. 12. 개정	2013. 5. 9. 개정
2013. 8. 19. 개정	2015. 1. 12. 개정
2015. 8. 10. 개정	2016. 6. 30. 개정
2016. 9. 28. 개정	2017. 10. 11. 개정
2018. 3. 19. 개정	2018. 8. 3.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4. 2. 개정
2019. 8. 29. 개정	2019. 11. 15. 개정
2019. 12. 26. 개정(회계규정)	2019. 12. 31. 개정
2020. 9. 17. 개정	2020. 11. 18. 개정
2021. 9. 8. 개정	2021. 10. 25. 개정
2021. 12. 8. 개정	2022. 2. 18. 개정
2023. 5. 4. 개정	2023. 12. 13. 개정
2023. 12. 29. 개정	2024. 12. 30. 개정
2025. 8. 7. 개정	2025. 11. 6. 개정
2026. 5. 1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남양주시 남양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균형개발과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공사는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한다. 영문으로는 Namyangju City Urban Corporation(약호 NCUC)라 표기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공사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필

요한 경우에는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000억 원으로 하고, 시가 전액 현금 및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08. 8. 20.>
② 제1항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공고방법) 공사가 공고할 사항은 시의 시보,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이를 게재하고 고시할 사항은 시보에 게재한다. 다만, 시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할 수 있다.

제6조(규정의 제정) ① 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정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자체내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설립등기) 공사는 자본금의 납입이 있는 날부터 3주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6. 임원의 성명과 주소
7. 공고의 방법

제2장 임·직원

제8조(임원의 임면 등)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8. 8. 3.>

②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사장,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명하며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2. 12.>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공모 및 추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12. 12.>

③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개정 2013. 5. 9.> <개정 2019. 4. 2.>

④ 임원(사장, 상임이사)이 임기 중 의원면직하고자 할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면직을 신청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남양주도시공사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한 내규」 별표1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4. 내부 감사 또는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담당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개정 2021. 9. 8.>

제9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② 임원 중 사장은 상임으로 하고 이사 2인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9. 28.> <개정 2018. 8. 3.>

③ 비상임이사는 다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1인을 당연직으로 다음 제3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중 4인을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9. 12. 12.> <개정 2015. 1. 12.>

1. 시의 예산 업무담당 실·국장
2. 시의 도시 업무담당 실·국장
3. 세무 및 회계분야 전문가
4. 경영 및 시설물 관리분야 전문가
5. 법률 전문가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2.> <개정 2015. 1. 12.>

② 제1항에 의한 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며, 감사 및 이사는 사장의 연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 12. 12.>

③ 임기 중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그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개정 2009. 12. 12.>

제10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 공사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9. 12. 12.>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에 의한다. <개정 2009. 12. 12.>

③ 위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명이 끝나면 자동해지된다. <개정 2009. 12. 12.>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2.>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임원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사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09. 12. 12.>

⑥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해 공사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2. 12.>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부의한 의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

③ 상임이사는 사장을 보좌하고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를 분장·관리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규정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8. 3.>

④ 감사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⑤ 임원은 법령과 정관에 따라 공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삭제>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임원만 해당)

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삭제>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8. <삭제>

② 공사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에 의해 퇴직된 임·직원이 퇴직 전에 행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21. 9. 8.>

제13조(조직 및 정원) ① 공사의 조직은 1본부 3실 3처 30부(팀)을 둔다.<개정 2023. 12. 13.><개정 2023. 12. 29.><개정 2025. 8. 7.><개정 2025. 11. 6.>

② 공사의 정원은 522명으로 하고,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제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12.> <개정 2015. 8. 10.> <개정 2016. 6. 30.> <개정 2016. 9. 28.> <개정 2017. 10. 11.> <개정 2018. 03. 19.> <개정 2018. 8. 3.>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4. 2.> <개정 2019.11.15.> <개정

2019.12.31.> <개정 2020.9.17.> <개정 2021. 9. 8.> <개정 2021. 10. 25.> <개정 2021. 12. 8.><개정 2022. 2. 18.> <개정 2023. 5. 4.><개정 2023. 12. 13.><개정 2023. 12. 29.><개정 2024. 6. 11.><개정 2024. 12. 30.><개정 2025. 8. 7.><개정 2025. 11. 6.><개정 2026. 5. 13.>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한다.
② 공사의 직원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임·직원의 복무) 공사의 임·직원은 공사에서 정한 취업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한다.

제16조(임·직원의 겸업제한) 공사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과 정규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직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8. 20.>

제17조(신분보장) 공사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 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18조(임·직원의 보수) ① 공사의 임·직원은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를 받으며, 보수기준은 공사의 경영성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수당 이외의 이사활동에 필요한 실비,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2.>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

쳐 임·직원 중에서 공사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20조(임원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21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 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12. 12.>
- ④ 의장은 이사회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 12. 12.>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회의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 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24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4. 조직,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5. 주요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
7. 사채의 발행 및 상환에 관한 사항
8. 자산평가액의 확정
9.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수탁에 관한 사항
10.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
11. 결손금 처분에 관한 사항
12. 기타 공사운영에 필요하다고 사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의장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3인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9. 12. 12.>

②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회의목적, 개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적이사 3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사안일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 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2.>

제26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공사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의 승인
3. 정관 변경
4.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제27조(서면결의) 의장은 이사회 부의사항 중에서 업무형편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 개최를 서면으로 부의하여 재적이사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 경우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12.>

제28조(의사록 작성)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29조(운영규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 12.>

제4장 사 업

제30조(사업) 공사는 제1조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개발·공급·임대 및 관리
2. 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건설·개량·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지·리조트 등 위락단지 조성 및 관리
4.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5.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관련 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6.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외 무역·외자유치 및 그와 관련된 투자업무
7. 건설자재의 생산 및 공급
8. 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
9. 국가 또는 시가 대행 또는 위탁한 업무
10.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부수되는 설계용역 및 감리 등의 업무
12.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

제31조(대행사업 등) ① 공사는 국가, 시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63조에 의하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2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외의 지역에서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장 재 무 회 계

제33조(사업연도) 공사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 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장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35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①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6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한 서류 및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회계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38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결산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부채상환, 사업 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사업 준비 적립금으로 보전
2.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이월

제39조(기금의 조성) ① 사장은 사업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사장은 제1항에 의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40조(수입 및 정산) ① 공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시에서의 전입금
2.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
3. 자체 사업수입
4. 기타 재원

② 제30조 제9호와 제10호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장 사채 등 발행

- 제41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 ② 공사가 제1항에 의한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그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발행목적
 2. 사채의 발행시기
 3. 발행총액
 4. 권 중별 액면금액
 5. 이율
 6. 원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7.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8. 소환방법
- ③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사장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채의 번호
 2. 발행년월일
 3. 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
- ④ 사장은 제1항에 의한 사채·외국차관의 상환 보증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제42조(단기차입금)** ①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관이 2년 이내인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② 공사는 예산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그 차입 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 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 제43조(정관의 변경)**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44조(해산)** ① 공사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하지 아니한다.

- ② 공사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공사의 잔여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 제45조(경영평가)** ① 공사는 연 1회 이상 경영평가를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사장의 임면과 공사의 업무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시장이 실시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는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46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공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요물자의 구매와 시설공사 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47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공사의 사장은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의 파견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사장은 시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시와 공사의 원활한 업무 공조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사의 직원을 시에 파견할 수 있다.

- 제48조(시행규정)**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장이 따로 정한다.

- 제49조(준용)** 이 정관에서 정한 사항 이외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 제2조(최초의 사업연도)** 공사의 최초의 사업연도는 공사의 설립일 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3조(최초임원의 임기)** 공사의 최초 임원의 임기는 공사 설립일 부터 기산한다.

제4조(경과규정) ① 이 정관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제4조에 의한 출자금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른 자산취득은 공사로 귀속한다.

③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최초의 직제규정,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 제 규정과 지정 금융기관의 지정은 시장이 정한다.

부 칙 <개정 2008. 8. 2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 12.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5. 9.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3. 8.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1.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5. 8. 1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6. 9.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10.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03.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8. 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8.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9. 1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0. 11. 18. >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9.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10.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1. 12. 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2. 2. 1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5. 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3. 12.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정관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6. 1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8. 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5. 11. 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26. 5. 1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5. 1. 12.> <개정 2015. 8. 10.> <개정 2016. 9. 28.> <개정 2017. 10. 11.>
<개정 2018. 03. 19.> <개정 2018. 12. 28.> <개정 2019. 4. 2.> <개정 2019. 8. 29.> <개정
2019.11.15.><개정 2020. 11. 18. > <개정 2021. 9. 8.> <개정 2021. 10. 25.> <개정 2022. 2. 18.>
<개정 2023. 5. 4.><삭제 2023. 12. 13.>